

「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7.) → 2023. 9. 4. 개정 판 (시행 2023. 4. 19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76/compare?from=1317&to=146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11:21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자격 및 구성) 위원회의 위원은 <u>학생처장(위원장), 장애학생지원센터장(서기), 교수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자문교수(1)로 구성된다. <개정 2012-11-26></u>	제3조(자격 및 구성) ① 위원회는 <u>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2-11-26></u> ② 위원회의 위원은 <u>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<신설 2023-04-18></u> 1. <u>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</u> 2. <u>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</u> 3. <u>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</u>
제4조(선임)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의 유고나 결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 위원은 <u>본교 교직원 중에서</u>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	제4조(선임) 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의 유고나 결위 시에는 제3조에 열거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<u><개정 2023-09-04></u>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위원회는 <u>위원장(장애학생지원센터장)이 위촉하되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 부서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한다.</u> ② 위원은 <u>장애학생지원센터장(위원장),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(서기), 교수지원팀장, 건축안전관리팀장, 총학생회 복지부장, 장애학생대표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-11-26></u> ③ 위원장은 <u>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학생지원센터담당자가 된다. <개정 2022-03-07></u>	제8조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자격 및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1.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
2.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
3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

제4조제2항 중 "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"을 "위원장"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